

초등교사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초등교사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선거 관련 이의 제기 및 문제 제기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 위반 사항 신고, 징계 요청 등이 먼저 접수되어야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의 제기, 위반 사항 신고, 징계 요청 등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이메일 접수 : estu_vote@naver.com)와 공식 양식(붙임 1. 선거관련 문의 및 신고서 - 선거 지침에도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문제 제기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된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논란이 지속·확산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선거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 권고,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선거 당사자 또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거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거 질서 저해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수준까지 나아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소, 고발 등 민·형사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선거규정 제15장 징계 및 벌칙

제122조(벌칙)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 23조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요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
3. 67조 규정(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을 위반한 자
4. 제123조 1항 6호의 경우에 해당한 자

② 1항 1호 및 4호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조합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3조(후보자에 대한 처리)

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122조 제1항 1호에서 3호를 제외한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과 경고장을 후보자에게 송부
2. 제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 제2차 경고장 및 후보자의 사과문을 당해 선거구 홈페이지에 게재
3. 제3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2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의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 및 모바일 안내를 전송하는 것을 추가
4. 제4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3차의 경우에 선거구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 및 모바일 안내를 전송하는 것을 추가
5. 제5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4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 투표소에 이를 공고하는 것을 추가
6. 6차 위반하였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3. 절차 외 공개 게시물에 대한 경고

⇨ 초등교사노동조합 선거규정 제63조, 제67조 등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이자 규정상의 의무입니다.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되나, 개인 SNS, 밴드, 외부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글 역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의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고도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유지해주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공정선거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경고, 정권, 제명에 이를 수 있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징계, 포상 규정 제10조(징계의 종류와 양정)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제명에 처할 수 있다.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 전복할 목적으로 조합규약에 반한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직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3.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4.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5. 범죄행위 등으로 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6. 3회 권리정지를 당한 자
 7. 기타 조합의 설립 목적에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권리정지에 처한다. 권리정지는 6월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1.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의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치 않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2. 조합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3. 폭력 및 괴롭힘, 성폭력 등의 행위자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5.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기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에 처한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2. ②항의 징계 대상자로서 그 행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자
-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언행, 조합 활동의 공적, 반성하는 태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양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나 선거 관계자를 보호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정과 절차,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선거는 조합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건설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의견이 모두에게 신뢰받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관련 문의 및 신고서

구분	내용
작성일	202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문의 또는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문의 <input type="checkbox"/> 신고
문의 또는 신고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문제 발생 일시, 장소, 상황, 관련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관련 근거 또는 참고자료 (관련 규정 및 규칙 등 조항, 증빙자료, 스크린샷, 녹취록, 사진 등 첨부 목록 작성)	
요청 사항 (문의 시: 확인 요청 내용 / 신고 시: 조치 요청 내용 명시)	